

대학원 법학과 운영 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법학과(이하 '법학과')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

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2장 자격시험

제3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

종합학력시험 면제 조건은 각 호와 같다.

1. 석사과정 중 SCI·SSCI·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(교신저자, 제1저자 포함)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(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논문게재 시에는 2편당 1과목)
2. 박사과정 중 SCI·SSCI·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(교신저자, 제1저자 포함)에 논문을 2편 이상 게재(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논문게재 시에는 3편당 1과목)
3. 행정고등고시, 입법고등고시, 법원행정고등고시, 사법시험, 변호사시험에 최종 합격

제4조 (종합학력시험 구두시험)

- ① 응시자는 필기시험 과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구두시험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.
- ② 구두시험의 평가위원으로는 응시자의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전임 교원 2인으로 한다.
- ③ 구두시험은 전공지식, 소양, 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다.

제5조 (외국어시험 과목 및 면제)

- ① 외국어시험과목을 내국인 학생은 영어,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로 한정한다.
- ②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3장 학위과정

제6조 (석사학위 취득 방법)

석사학위는 학위논문 작성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, 연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4장 학과운영위원회

제7조 (의사결정 방식)

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